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203713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20371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982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명 담당변호사 김주완, 김한길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원고 1, 2, 4,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정진욱

피고, 피항소인 1.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이응교

2.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조성규, 홍성은

3.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4.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이예지

변론 종결 2022. 12. 22.

판결 선고 2023. 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합59823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40,457,390원,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각 62,529,052원, 원고 E 주식회사에 69,771,3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3,365,930원,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각 20,668,506원, 원고 E 주식회사에 23,064,6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777,622원,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각 4,307,915원, 원고 E 주식회사에 4,810,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 I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777,622원, 원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각 4,307,915원, 원고 E 주식회사에 4,810,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1행의 "원고 프로젝트 회사"를 "L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16행의 "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584 결정"을 "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쪽 16행부터 17행까지의 "또한 .. 아니하였다."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이 L 회사의 출자자 또는 J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로서 출자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여러 업무를 처리한 점, 이 사건 제1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을 포함하여 J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에게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공동의뢰인으로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제1소송의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분담,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제1심과 항소심은 각 23개 회사, 상고심은 17개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1소송의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부담,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AF법률사무소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의뢰인으로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보수(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정하였을 뿐인 점[L 회사만이 소송의 당사자인 이 사건 제2소송의 경우에도, L 회사의 출자자 또는 J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제1심은 6개 회사, 항소심은 4개 회사)만이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L 회사의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2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순승소금의 20%를 실제 부담한 비율에 따라 배분받기로 하였다],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소송을 AF법률사무소에 위임하면서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 부담 비율을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인데, 소송비용 상환의무는 패소시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패소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서는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은 대부분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제1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 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소송의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부담,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범위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와 별도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부담 부분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에 따라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

상환의무와 다른 내용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이 공동의뢰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근거로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부담한 소송비용은 합계 약 44억 3,000만 원이고, 그중 원고들은 적게는 약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억 원, 피고들은 적게는 약 3억 원에서 많게는 약 15억 원을 각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제1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이 패소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소송비용 합계 약 25억 원에 관하여 균등하게 약 1억 1,000만 원씩(상고심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약 8,000만 원) 부담하게 된 것을 두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 중 원고들 외에는 이 사건 제1소송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균등 부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소송의 패소시 상환해야 할 상대방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에서 정하여진 것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들의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분담,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소송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인 J 컨소시엄의 구성원 지위에서 제기한 소송이므로 그 패소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민법 제711조에 의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송의 경우 J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일부만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공동의뢰인으로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였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제1소송의 경우 L 회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38조에 의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소송에 참여한 회사들은 AE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부로서 위 계약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AE으로부터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L

회사와 함께 공동원고로 참여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제1소송을 J 컨소시엄의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J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이나 협약과 관련한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업무를 누가 주관할 것인지 또는 그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해 놓은 합의 내지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홍승면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